

자판기영업신고 및 운영자 관련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우리 협회가 지난해 산업자원부 기업활동규제완화심의위원회를 통해 개선 관철시켰던 자판기 영업신고 규제완화가 올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으로 공식 개정되었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그동안 많은 운영자 불만요인으로 작용했던 위생교육 과다, 운영자 건강진단수첩 휴대 등의 조항이 산업계 희망대로 개정되어 앞으로 자판기 운영자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란에서는 보다 간편하고 효율화된 자판기 영업신고 및 운영자 준수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대폭적인 일괄 영업신고 체계 개선

이제부터 자판기 영업신고는 동일 읍·면·동안에 식품자동판매기 2대 이상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일괄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은 체계 개선은 동일건물 또는 인접건물내로 일괄신고의 범위를 포함했던 당초의 안보다 대상범위가 더욱 확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가 산업계 입장을 적극 수렴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같이 대폭적인 일괄영업신고체계 개선으로 그동안 큰 행정낭비요인으로 작용했던 영업신고체계가 크게 효율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자판기 전문 운영자들은 동일지역 및 건물에 설치된 자판기라 할지라도 이를 일일이 개별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비능률을 감수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그전까지는 대당별로 각기 고지 납부해야 했던 면허세가 일괄신고한 영업신고서 기준으로 같은 시기에 일괄해서 고지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금납부의 편리성도 크게 증진되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자판기 영업신고가 일괄신고 체계로 바뀜에 따라 면허세도 영업신고서 1건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도 가졌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면허세는 종전과 같이 대당 납부해야 한다.

이는 면허세가 단순히 자판기분야에 있어 적용되는 세금이 아닐뿐더러 별도의 면허세법의 적용과 유권해석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법에 있어 중요시하는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자판기 1대를 운영하는 운영자와 100대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세금

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자판기 일괄영업신고 체계의 개선으로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동일 읍·면·동에서 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고 있는 운영자들이 일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바뀐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서 재교부를 진행 받아야 한다.

신규 운영자만 받으면 되는 위생교육

이외에도 이번 식품시행규칙 개정에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위생교육 규정중 그동안 3년마다 4시간 받도록 되어 있었던 의무규정이 영업신고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한번만 받으면 되게 바뀜으로서 既교육을 받은 운영자들은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자판기 운영자들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에 큰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개인운영자들의 경우는 본업을 따로 가지고 있고, 자판기를 순수한 부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에 참가하는 것 자체에 대해 큰 반감을 가지는 경우도 많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신규 운영의 경우에만 1번 교육을 받으면 되도록 한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 운영자들은 큰 기쁨을 나타내고 있다. 위생교육이 현실에 맞게 축소됨으로서 보다 교육 효과도 높일 수 있고 교육참석대상자 출석률도 크게 높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위생교육의 큰 질적향상을 기대케 한다.

한편 자동판매기 영업자 또는 관리자는 정기건강진단 및 자판기 관리시 건강진단수첩을 항상 휴대하도록 한 관련규정이 폐지·삭제가 되었다.

그간 현실적이지 못한 대표적 규정으로 지탄받던 이 규정이 삭제되게 된 것은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진단수첩의 발급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자판기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중 개정령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령 제139호, '99. 12. 29>

1. 영업의 신고 등(제27조)

-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서류
 - ① 시설배치도 삭제 : 규제개혁 차원
 - ②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③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에 한한다)
 - ④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함)
 - ⑤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⑥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영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⑦ 유선 또는 도선사업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영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⑧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영 제7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중 그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로서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⑨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 식품자동판매기를 신고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읍·면·동에서 2대 이상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음

2. 신고사항 변경신고사항(제28조)

-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으로서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 영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서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종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 영 제7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고자 하는 경우
- 영 제7조제5호나목(5)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읍·면·동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를 증감하고자 하는 경우

3. 영업자지위승계시 상호변경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33조제3항 신설)

-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자가 제23조제4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음

4. 위생교육(제36조, 제37조)

○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보수교육차원에서 교육은 폐지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36조제1항제3호)

-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이 식품으로 인하여 유행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육을 받도록 고시한 영업자 및 종업원

○ 위생교육기관(제37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생교육 전문기관 또는 단체

○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자종 신규영업자에 대한 교육시간(제37조의2제2항)

-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의 영업자 :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후 3월 이내 12시간. 다만, 당해 영업소에 제15조 각항에 해당하는 식품위생관리인이 식품위생관리인의 교육을 받은 때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영 제7조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의 영업자 : 영업신고후 6월 이내에 4시간

○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업종과 동일한 업종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내의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7조의2제3항)

영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과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동호라목의 유홍주점영업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동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신설)

※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동조제4호 내지 제7호에 해

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별표증 개정사항

○ 별표 13(식품접객영업자등의준수사항)

- 제3호가목 : 삭제(☆자판기 영업자 또는 관리자는 정기건강진단 및 자판기 관리 시에는 건강진단수첩을 항상휴대하는 규정을 삭제한 것은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 진단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진단수첩의 발급이 폐지되어 이를 삭제하였고, 정기 건강진단은 동준수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동규칙에 의하여 실시)

·사목 : “영업신고번호” → “영업신고번호, 자판기별 일련관리번호(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대 이상을 일괄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6. 행정사항(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3호(수입식품증 대표성이 없을 때에는 실적인정불가) 및 별표 16 제3호(식품등의 수입식품의 수 수료)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영업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냉동·냉 장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2000년 3월 31일까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영업신고증을 새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엿류, 어육제품(어묵 살, 어육반제품 및 연육은 제외), 두부류, 다류(커피중 인스탄트커피는 제외), 갈비 가공품, 건조저장육, 기타식육가공품 및 즉석건조식품의 제조·가공 등을 위하여 식 품제조·가공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중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그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2000년 3월 31일까지 그 신청을 받아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영업신고증을 새로 교부 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읍·면·동안에서 동일 영업자 2대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함에 있어 식품 자동판매기별로 각각 영업신고를 한 자중 제27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일괄 신고를 하자 하는 경우에는 2000년 3월 31일까지 영업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별표 16]

수 수 료(제59조관련)

1. 영업허가 및 신고 등

- 신 규 : 28000원
- 변 경 : 26500원
- 조건부영업허가 : 28000원
- 집단급식소설치신고 : 33800원
- 허가증(신고증) 재교부 : 5300원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9300원

* 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규영업허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영업의 신고등) ①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u>별지 제25호서식</u> 의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영업의 신고등) ①----- -----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u>후 별지 제25호서식</u> ----- -----.
<u>1. 시설배치도</u>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u>영 제13조제4호의 영업에 한한다</u>)	3. ----- (<u>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에 한한다</u>)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u>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u>
<u><신 설></u>	6. <u>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영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u>
<u><신 설></u>	7. <u>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u>

<p><신 설></p>	<p>8.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영 제7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중 그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로서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p> <p>9.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p> <p>②-----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 -----.</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함에 있어서 영 제7조제5호 나목의 식품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안에서 <u>식육판매업</u>, <u>자동판매기영업</u>, <u>식용얼음판매업</u> 및 기타 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신 설></p> <p>③신고관청이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도시계획관계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7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관계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갈음하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신고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읍·면·동에서 식품자동판매기를 2대 이상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품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할 수 있다.</p>
<p>제33조(영업자지위승계신고)</p> <p>② (생 략)</p> <p><신 설></p>	<p>제33조(영업자지위승계신고)</p> <p>② (현행과 같음)</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자가 제23조제4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p>

<p>제36조(위생교육대상자)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대상자로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영양사와 조리사를 제외한 종업원 	<p>제36조(위생교육대상자)-----</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이 식품으로 인하여 유행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화산 등으로 국민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육을 받도록 고시한 영업자 및 종업원 -----</p> <p>-----</p> <p>-----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 -----</p> <p>-----</p> <p>-----</p> <p>-----</p>
<p>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대상자로는 허가관청에서 교육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벽지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p> <p>제37조(위생교육기관등)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의 실시기관과 실시기관별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동조제2호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 및 식품위생관리인 : 한국식품공업협회 2. 영 제7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동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자(건강보조식품 판매업의 경우 방문판매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조제6호의 식품보존업자, 동조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자, 동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및 식품접객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동업자조합이나 단체 	<p>제37조(위생교육기관등)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의 실시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생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p>

<p>3.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종사하는 자 :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주 또는 해당업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영양사 또는 식품위생관리인</p>	<p>(생략)</p>	<p>제37조의2(교육시간)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는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식품위생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12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벽지등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업허가를 받은 후 또는 선임신고후 3월이내에 허가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p>	<p>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자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7호[제5호 나목(5)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 매년 4시간 2. 영 제7조제5호 나목의 (1) 식육판매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 : 영업신고후 2월이내에 6시간 3. 영 제7조제5호 나목(5)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 : 3년마다 4시간(신규 영업자는 영업신고후 6월이내에 4시간) 4. 영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 3년마다 4시간 5. 식품위생관리인 : 매년 4시간 6.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업원 : 매월 1시간 	<p>(현행과 같음)</p>	<p>제37조의2(교육시간) -----</p>	<p>-----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또는 선임신고후 3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p>	<p>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자중 신규 영업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의 영업자 :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후 3월 이내 12시간. 다만, 식품위생관리인 또는 영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이수한 자가 당해 영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영 제7조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의 영업자 : 영업신고후 6월 이내에 4시간
--	-------------	--	---	--	-----------------	---------------------------	--	---	---